

주민조례 개정 청구취지 공표

「지방자치법」 제19조에 따라 주민의 조례 개정 청구가 있어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청구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2022년 4월 21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



1. 청구조례명: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
2. 청구인의 대표자 : 6명

성명	주소	비고
현태봉	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	
심유리	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	
이은영	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	
권의경	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	
조진석	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	
김태형	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	

3.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: 2022. 4. 21.
4. 서명 요청기간: 2022년 4월 21일부터 2022년 8월 3일까지
(제외기간 : 2022년 5월 19일부터 2022년 6월 1일까지)
5. 연서 주민수: 2,178명[청구권자 총수(152,396명)의 1/70 이상]
6. 조례개정 청구취지 및 이유

현재 제정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의 경우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경비노동자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는 역부족입니다. 이에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 상담 및 정책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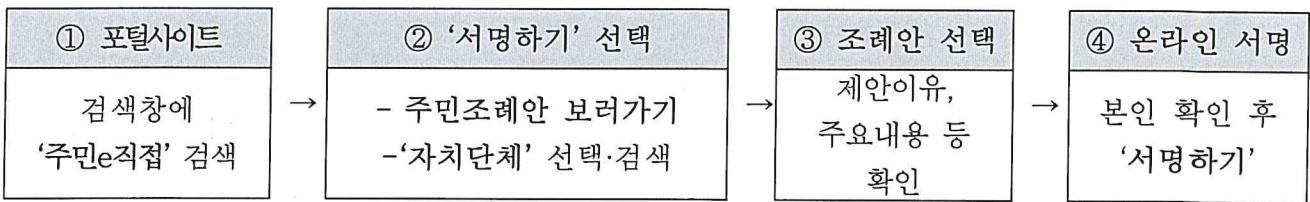
발 등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바꿀 수 있는 지자체의 권한과 책무를 적극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.

7. 주요내용 : 붙임의 조례안 참고

8. 전자서명절차 안내

가. 전자서명 시스템 인터넷주소 : 주민e직접 www.juminegov.go.kr

나. 전자서명 방법



※ 전자서명 취소 방법

- ① ~ ③번 과정 동일 → ④번 과정에서 '서명취소' 버튼 선택

9. 기타 본 공고(공표)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(☎042-608-508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조례안 1부. 끝.